

제302회 정례회
2011. 7. 22.(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7. 22.(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6월 30일
- 회부일자 : 2011년 7월 7일

다. 상정일자 : 2011년 7월 18일

-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용길 보건환경연구원장)

가.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검사 수수료 반환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수수료 반환 금지 문구 삭제 (안 제3조제4항)
- 수수료 반환 조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 시험용 검체 소요량 중 중복문구 등 수정 (별표)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홍범희)

가.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계획에 따라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체 시험을 의뢰하는 민원인에 대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

나.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

- 수수료 반환 금지 규정이 제3조제4항과 제7조에 중복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 제3조제4항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민원인이 수수료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며, 시험용 검체 소요량 중 중복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차액
2.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별표의 식품류 검사 시험용 검체 소요량 난 제2호 중 “세균검사없는 항목 : 3개 이상”을 “세균검사있는 항목 : 6개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뢰한 것부터 적용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③(생략) 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p> <p>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검체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행하 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 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별표>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p>			<p>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③(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한다.</p> <p>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차액 2.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p> <p><별표>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p>		
시험 종별	처리 기간	시 험 용 검 체 소 요 량	시험 종별	처리 기간	시 험 용 검 체 소 요 량
식품류 검 사	18일	1. 세균검사없는 항목: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mℓ)) 2. 세균검사있는 항목: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mℓ)) 3. 용량검사있는 항목: 추가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mℓ))	식품류 검 사	18일	1. 세균검사없는 항목: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mℓ)) 2. 세균검사있는 항목: 6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mℓ)) 3. 용량검사있는 항목: 추가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mℓ))

관련법령 발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수수료 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
(사용료 등 :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제증명 수수료 등)

[미비점]

- 반환범위(금액,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하는 경우가 불분명하거나, 반환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재량적(유동적)임

[개선방향]

- 반환하는 경우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범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함
- 반환범위(금액, 비율)는 각 자치단체의 형편이나 공공시설물의 성격 등 제반 변수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을 것임